

불티나는 자동절체기, 무엇이 문제인가?

-LP가스 체적거래제에 따른 수요 폭증-

최근 LP가스 체적거래제에 따른 자동절체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7년 12월말까지 업무용 건축물에 한해서 반드시 체적거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자동절체기를 일신금속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과잉수요에 따른 공급미달로 인해 현재 3~4개 업체가 생산을 준비 중에 있다.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거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신금속 박형식 개발실장은 “본 제품의 개발에 1억원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

요되고 판매 시점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자동절체기 생산을 머뭇거리게 됐다.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도 제품생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다”라고 지적한다.

LP가스 체적거래제의 기본설비중의 하나인 자동절체기는 용기에 든 가스를 다 사용하고 난 후 자동으로 옆에 있는 용기로 가스의 흐름을 전환시켜 끊어짐 없이 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동절체기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동사 박 실장은 “자동절체기는 작년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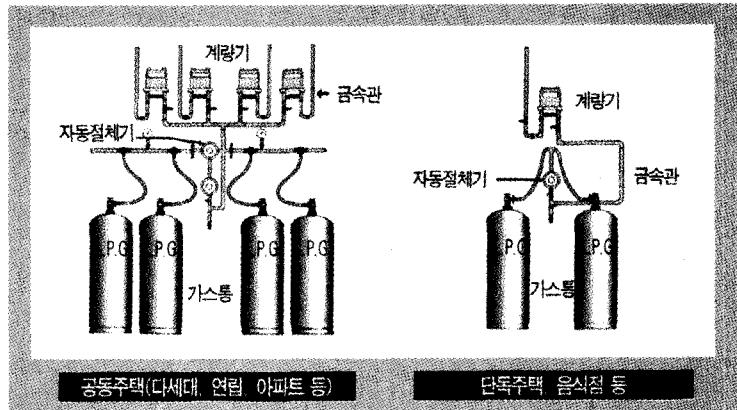
에 착수, 6월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합격한 후 판매를 시작했다. 10월 말부터 통산부와 가스안전공사의 후원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지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밝힌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시행 안전한 가스공급 확보

기존 LP가스시설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은 물론 가스가 떨어질 때마다 주문하여 배달 받아야하고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안정성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스중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존 LP가스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업소와 가정의 가스시설 안전 제고를 위해 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했다.

LP가스체적거래제는 종전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중량사용 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한다. 또한 계량기



를 부착하여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정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요금도 사용후 지불하도록 한 거래방식이다.

이 제도는 전화로 주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일정분의 용기에 가스를 수시로 공급하므로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다.

도시가스처럼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 만큼만 지불하는 후불제이며 가스사고의 위험을 대폭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량공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주므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P가스체적거래제의 기본 설비로는 용기집합설비, 자동절체기, 계량기, 금속관, 휴즈콕크 등이 있다. 또 식품점업체 중 사용신고대상의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기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시설예상금액은 식품점업체의 경우 40~50만원선, 일반가정의 경우 20~30만원선이다. 또한 시설의 미교체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번 발표된 자동절체기 의무화 유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절체기 의무화 유보는 소형업체를 포함한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억제정책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절체기 사용 의무화 대량생산체제 필요

자동절체기의 생산이 국산화되고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가면 이러한 일시적인 유보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현재 월 2만개 이상 생산하고 있는 일신금속측에서는 과잉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점차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제품과 우리제품의 성능과 가격 차이에 대해 박실장은 “자동절체기의 구조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하지만 가격면에서는 이미 일본제품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우리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수입업체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음식점 등 업무용 건축물은 97년 12월 말까지, 공동주택(연립, 아파트)은 98년 12월

말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00년 12월 말까지 시설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건축물(주택 및 업무용 등)은 반드시 처음부터 체적거래설비를 설치, 사용해야 한다.

LP가스체적거래제는 일본에서도 10년 정도의 정착기간이 소요됐다. 우리의 경우 본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시공인력의 부족, 시공비의 천차만별, 시민들의 인식부족, 시행을 위한 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표준공사비의 설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일체형 자동절기는 그 용도와 압력이 업소용과 다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경에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절체기 생산에 대한 대량생산체제 마련, 제품의 완전 국산화,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